##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09-67호

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9년 3월 24일

행정안전부장관
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## 1. 개정이유

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정적립금 적립율 상향조정, 차입 범위확대, 우선출자제 도입 등의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,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 제고 등을 위한 임원결격사유 강화, 형사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제 등을 도입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안전부 장관의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접근권한 근거 명시
- (1) 행정안전부 장관이 금고를 감독·검사시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.
- (2) 행정안전부장관을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간주토록 관련규정 신설
  - (3) 행안부 장관의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 열람에 따른 위법성 논란 제거
  - 나. 금고 세부 설립인가 요건 및 인가취소 사유 법정화
    - (1) 금고 설립인가 요건 및 인가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
- (2) 금고 설립인가에 필요한 출자기준 및 설비기준을 규정하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설립인가시 연합회를 경유토록 하며, 출자기준 미달 금고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.
- (3) 설립인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설립인가 후에도 요건이 미달된 금고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를 통해 금고 부실에 따른 회원 피해 방지
  - 다. 금고 임원결격 사유 강화 등
- (1) 금고 임원결격 사유에 수형사실 이외에 금고의 내부 징계사실을 포함하고, 수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.

- (2) 금고에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, 임원개선요구를 받은 자, 임원개선이나 징계면직 처분을 받기 전에 퇴직한 자의 임원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한편,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수형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금고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하도록 함.
- (3) 임원자격이 부적정한 자들이 해당 금고나 다른 금고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대외 신뢰성을 제고하고, 금고 부실화 방지를 통한 회원 피해 방지
  - 라. 상근임원의 다른 기관 상근직 겸직 금지
    - (1) 금고 상근임원들이 다른 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겸직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.
- (2) 금고 상근임원은 다른 기관 상근직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연합회장이 직무정지를 명하도록 함.
  - (3) 금고 임원의 업무 충실도 제고를 통해 금고의 성장 · 발전 도모
  - 마. 금고 법정적립금 적립율 상향 조정
    - (1) 금고 법정적립금 적립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.
    - (2) 금고 법정적립금 적립율을 잉여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 조정함.
    - (3) 금고 법정적립금 적립율 상향 조정으로 재무 건전성 제고
- 바. 새마을금고 연합회 실적 배당형 상품판매
  - (1) 연합회 사업에 예탁금 및 적금 이외의 실적 배당형 상품 판매를 추가하고자 함.
- (2) 연합회가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, 이 경우 「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적용을 배제함.
  - (3) 연합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연합회 사업 실적 거양 및 수지 개선
  - 사. 연합회의 차입 및 우선출자 제도 신설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
    - (1) 연합회의 자기자본 확충 방법을 명시하고자 함.
- (2) 연합회가 신용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위하여 차입할 수 있게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자에게 배당에 있어 우선권이 있는 출자를 발행할 수 있게 하되, 우선출자자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음.
- (3) 연합회의 우선출자 발행 및 후순위 차입을 통한 자기자본(기본자본 및 보완자본) 확충으로 재무건전성 제고
- 아. 연합회의 외부회계감사 실시 의무화
  - (1) 연합회의 외부회계감사 실시를 의무화 함.

- (2) 연합회장은 연1회 이상 연합회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함.
  - (3) 외부회계감사 근거 마련을 통한 연합회의 회계 투명성 제고
  - 차. 금융사고로 형사기소된 임직원 직무정지제도 신설
    - (1) 금융사고로 형사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.
- (2) 횡령, 배임, 배임수재, 사금융 알선 등으로 형사기소된 임직원에게 연합회장이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.
  - (3) 금융사고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추가적 재산 손실 및 대외 신뢰성 저하 방지

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(참조: 지역경제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, 우편번호 110-760, 전화: 02-2100-2975, 팩스: 02-2100-431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(http//

www.mopas.go.kr

)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법령안

첨부파일없음

규제영향분석서

첨부파일없음

참고·설명자료(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 등)

첨부파일없음